

부산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단272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주

피 고 1. B 유한회사

2. C

3. D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78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주식회사의 전대차계약

원고는 2014. 10.경 F로부터 ‘부산 연제구 G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한 후, 2016. 4.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그 중 일부인 1,650㎡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가, 2017. 12.경 E의 월세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관련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E, 피고 C, D을 상대로 E이 미지급한 2016. 4.분부터 2018. 9.분까지의 차임 합계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1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 및 57,219,050원의 정산금 채무를 상계 내지 공제한 97,780,950원(=미지급 차임 합계 165,000,000원-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원-정산금채무 57,219,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9007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22. ‘E은 원고에게 97,78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나577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4. 24. E이 실질적으로 피고 C, D의 개인영업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거나 피고 C, D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5. 14. 확정되었다.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를 양수하였고,

2019. 4. 8.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 · 양수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E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E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E의 원고에 대한 차임 지급채무 또한 승계하였다.

나.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9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 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운송사업 양도계약에 기하여 E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함으로써 그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승계하는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란 그 운송사업 면허자 내지 등록자로서의 지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E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E의 원고에 대한 차임 지급채무까지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은 부부로서 E을 공동 경영하면서 E의 임원으로 취임하였고, E의 수입과 지출은 위 피고들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관리되었으며, 위 피고들이 E 이전에도 신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E은 실제로는 위 피고들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E의 실질적 배후자로서 원고에게 E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고서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또는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79968 판결 등 참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경우,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전소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소송물은 '원고와 E 사이의 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C, D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채권'이고, 이 사건 소송물 역시 이와 동일하다.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은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의 원고와 E 사이의 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C, D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던 원고와 E 사이의 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C, D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친다.

그런데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차임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전소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증거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경아